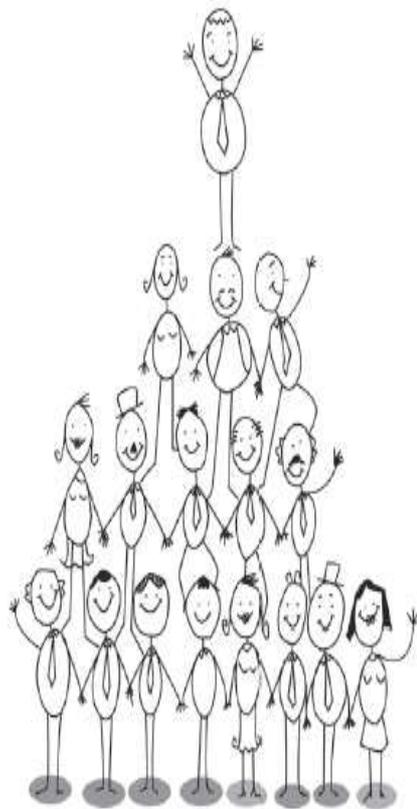


2015

##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

일시 : 2015년 6월 22일-23일

장소 : 사람人카페



“우리 함께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외칩시다!!”

■ 주최 : 반빈곤네트워크&대구주거복지센터



#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 목차

1.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 일정 : 4p
2.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에  
오신 여러분께 : 5P
3. 반빈곤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 9p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개편주거급여알기 : 11P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과 개선과제 : 63P

#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 일정

## ■ 1일 차(22일(월) 오후1시부터)

- 진행 : 대구주거복지센터 최병우 소장

### [오리엔테이션]

- 수강생 소개 및 빈곤네트워크 소개 : 1시-1시30분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실을 담은 영상물 시청 : 1시30분-50분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알아봅시다 I]

- 강사 : 김선미 주거복지센터 소장

- 1강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이해 : 2시간 - 3시30분
- 2강 : 달라지는 주거급여제도를 알아봅시다 : 3시간40분 - 6시

## ■ 2일 차(23일(화) 오후1시부터)

- 진행 :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알아봅시다 II]

- 강사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3강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선정과 선정기준 : 오후1시 - 2시30분
- 4강 :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보장내용과 사례분석 : 2시간40분 - 4시
- 5강 :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어떻게 바뀌는가? : 4시10분 - 5시30분

### [수료식]

- 수료식 및 평가 : 5시40분 - 6시

# 기초생활보장 상담활동가학교에 오신 여러분께

---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택시기사, 슈퍼 주인, 만화방 알바생, 노점상, 때밀이 아줌마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뒤섞여 살아가는 듯 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이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도시의 한 켠에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돈이 없는 사람일 뿐인데 어쩐지 이 세상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가본 적 없는 으리번쩍한 백화점부터 빠르고 비싸다는 KTX도 나오는 별 상관없이 없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알아서 굴러가는 커다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실, 세상은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수급이 필요하거나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거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수급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라일이라는 게 참 못 믿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수급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딱한데 수급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콩알만한 수급비 받아봐야 생활도 안 되는데 수급 받는다고 하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은지 부아가 치밀기도 합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는 아프면 병원에서 문전박대입니다. 이상합니다.

## **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모두 겪고 있습니다.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자살했다는 저 멀리 거제의 이씨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인이 가난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20대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 청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걸핏하면 해고가 됩니다. 일자리를 구해봤자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일 하다가 몸 다치느니 수급비 받고 있는게 안전하다고 움츠러드는 나의 고민은 결국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상담활동가학교에서 고민합시다!**

<기초수급상담활동가학교>는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질문은 오늘 함께 하면서, 또 이후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고민하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리가 서로 만났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모아서 서로가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밝히자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이 사회는 그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집시다. <기초수급상담활동가학교>에 함께 하면서 서로 많은 것들 익히고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빈곤,

##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 빈곤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의견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가 노력한 성과라구.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야”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이유가 있어. 저거봐, 돈 생기면  
얼른 써버리기 바쁘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래. 그러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어?”

- \* 가난은 개인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 가난의 세대간 전승 역시 그러한 ‘문화’ 를 습득했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한다.
- \*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기회의 평등’ 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등.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만 지원하는 것이 빈자의 이기심을 줄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 정책 사례 - 응급구호활동, 긴급지원, 생활보호법, 임시거처를  
위한 생활시설 등



## 빈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들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왜냐면 부자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가거든. 맨날 정리해고하고 취직해봤자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잘살아?”

“열심히 일해봤자 버는 돈이 적으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잖아? 부모들이 집해주고 차해주는 사람들이 결국 잘 살게 된다구”

“애초에 돈이 없어봐. 교육을 받을 수도,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수도 없어. 더 많이 아프고 말이지!”

- \* 가난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 가난의 세대간 전승 역시 직접적인 자본 및 사회관계 등의 간접 자원을 세대 간 공유,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난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정책 사례- 누진적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법 등

# 反빈곤네트워크 소개합니다!!

## 反빈곤네트워크 결성까지

지난 2007년 6월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다시보기』 토론회 이후, 토론회를 만들었고 함께했던 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 공동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빈곤문제에 대한 지역공동활동 수립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역내 빈곤에 대한 공동활동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주체형성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가칭'反빈곤 지역네트워크를 지역에 제안하고 만들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反빈곤 공동활동을 제안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준비위 회의를 거쳐 '反빈곤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 '反빈곤네트워크' 참가단위

### 참여현황 (2015년 3월 현재)

- 단체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노동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대구쪽방상담소 평화캠프 **이상 9개 단체**

### ① 위상과 목표

'反빈곤네트워크'는 反빈곤 지역운동의 전망모색과 지역 공동활동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빈곤문제에 대해

- 1>학습하고 소통하면서 의제를 만들어가고,
- 2>지역 공동활동을 구상하고 실천해나며
- 3>빈곤과 관련된 지역현안과 투쟁에 대해 지지/지원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지역 네트워크

### ② 운영 원칙과 체계

#### ■ 운영원칙

- 구성은 反빈곤 문제의 지역적인 고민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 모든 이슈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열려있다. 즉 당면한 지역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각 단체나 혹은 개인이 토론 혹은 연구/학습하고자 하는 사안을 제출하여 토론될 수도 있다.
- 제출된 사안의 처리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합의에 따라 공동실천이나 사업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 ■ 체계

- 전체회의 : 비정기적 개최하되, 긴급한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회의: '反빈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전체회의를 보조하고 의제 및 사업의 실질적인 실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단위를 둔다.

## ③ 역할

### ▲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공동투쟁체 혹은 대책위의 역할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 활동에 부하가 걸려있지만, 신자유주의下에서는 反빈곤 활동이나 의제를 지역화시키고 전국화시키며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의 의제를 확정하고 이러한 의제로 지역투쟁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평가하고 지역공동투쟁의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反빈곤'의 지역의제를 만들고 공론화시키는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각 부문별로 요구와 정책을 가지고 주체들이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별 대중투쟁들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의제의 개발을 통해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의제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나 정책들이 생산된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학술인 등과 연계해나가면서 지역의 네트워크(혹은 시스템)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反빈곤' 지역활동가를 교육하고 배출시키기 위한 교육

빈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초적인 의제는 거칠게나마 나열하고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의제들을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은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대중적인 지역운동을 만들기 전에 지역 단체(혹은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의제들을 확신시키는 노력과 빈곤활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문제를 연구하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생산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활동가들에게 교육하고 토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 개편 주거급여알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 1) 제도 성립 배경

-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여기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됨.

### 2) 연혁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00. 10. 1일부터 시행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 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Net, 공적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자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가동 2013년 완료<sup>1)</sup>.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 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2013년 7개 광역자활센터와 248개 지역자활센터 편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 3) 의의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량실업과 빈곤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빈곤 출현 등은 우리 사회에 과거와 다른 빈곤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했고, 여기에 낙후한 <생활보호법> 등 공공부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으로 활동이 수반되면서 새로운 법제정이 추진되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으로 결과 되었음.

○ 기초법은 종전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①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성을 강화<sup>2)</sup>, ② 인구학적 기준 삭제 등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③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④ 급여수준의 향상<sup>3)</sup>과 주거급

1)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2010년 1월부터 가동된 정부 전산망이다. 사통망(행복e음)에는 과거 국세청·국토해양부·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 재산,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복지사업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내용은 개인별·가구별로 종합해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특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되어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는 제도는 제3조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여항목 추가하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도모했고, ⑤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구했음. 이로서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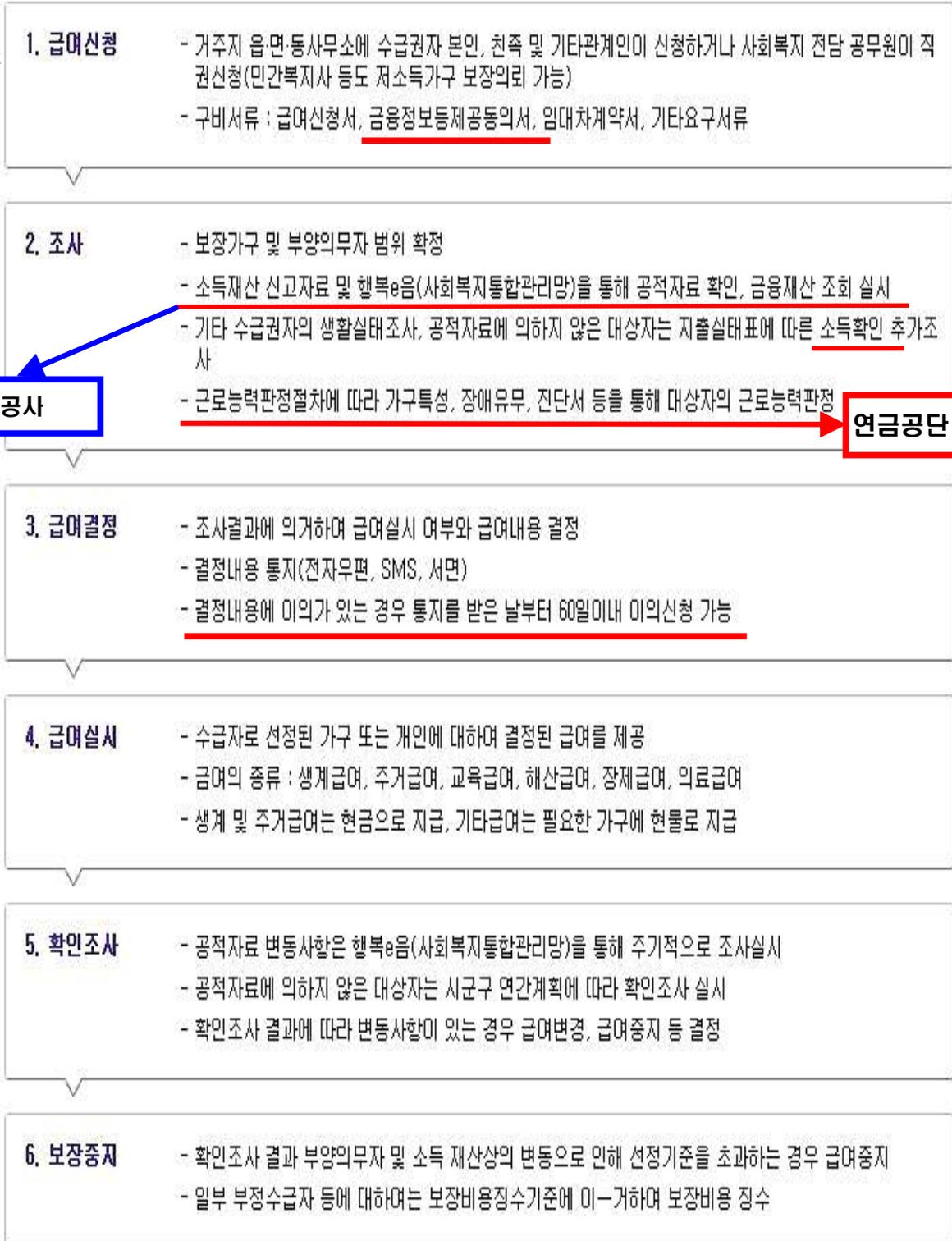
<표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u>권리적 성격</u> : <u>수급권자, 보장기관, 급여 등</u>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 자활보호자 - 위 대상 제외로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	- 연령별 대상자 구분은 폐지, <u>다만 근로능력에 의한 구분은 있음.</u>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함.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에 월소득 23만원(개인), 월재산 2900만원(가구) - 보호대상자와 부양가구의 가구원 1인 소득, 가구당 재산액이 생활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 <u>소득인정액(재산의소득환산액+가구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u> :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가구원수)별 계측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 - <u>부양의무자기준에 부합할 경우</u> : (당초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u>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2015년현재-사망한 1촌 배우자 제외)</u>
급여 종류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는 전체지원, - 자활보호는 의료비의 80%만 지원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학비 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다만 <u>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하여 지급</u> - <u>주거급여(신설) :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지급</u> - 의료급여 : 근로능력에 따라 1,2종 구분 -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 - 긴급급여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
자활 지원 계획	- 없음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조건 계획 : 수급자의 궁극적 자활촉진 목표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보호 수준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중위소득 40%내외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2. 수급신청절차

<그림 1>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 3. 빈곤층지원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미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2층 구조로 되어있음.

<그림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제도	시행시기
1.	1차 안전망	[사회보험] - 본인 기여금 분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1999년 건강보험 365일급여 확대 2002년 고용보험 1인사업장 확대 2000년 산재보험 1인사업장 확대 2000년 장기요양보험도입 2008년
	2차 안전망	[공공부조] - 본인 기여금 없음 <b>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b>기초보장제도 시행 2000년</b> 의료급여제도 차상위 확대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2007(2014년 기초연금)

<표 2> 사회보장방식과 보장영역별 제도

영역 방식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 (고용지원)
보험료방식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자산조사방식 (공공부조)	<b>기초생활보장</b>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장애연금 저소득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등 <b>주거급여</b>	<b>교육급여</b>	<b>의료급여</b>	공공근로 <b>자활사업</b>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사회수당)			무상교육	보건소 예방접종 등	

2) 짧은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 역할 해왔음.

- 기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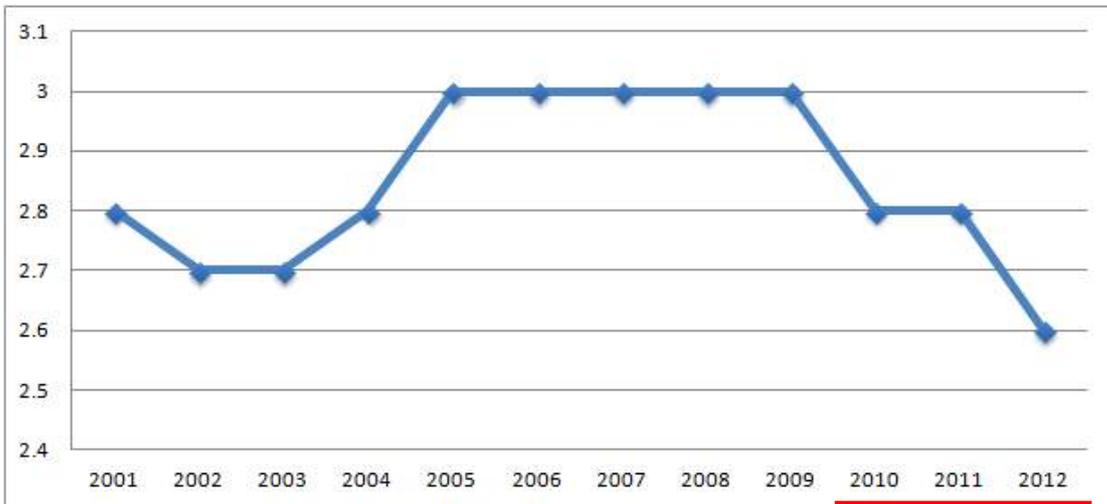
## 4.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

### 1) 수급자수 추이 및 기초보장제도 예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 동안 3%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최근 3%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2014년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국민의 2.6% 수준인 134만 8513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그림 3>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표 3> 기초생활보장예산 및 수급자 수 추이 (2002~2013)

연도	예산액	예산상 인원	실제수급자수				
			전인구 대비(%)	합계	일반수급	조건부과 수급	특례수급
2001년	1,598,539	1,550,000	3.0	1,345,526	-	-	-
2002년	1,563,124	1,550,000	2.8	1,275,625	1,238,922	36,703	-
2003년	1,586,299	1,500,000	2.9	1,292,690	1,256,361	36,329	-
2004년	1,791,324	1,550,000	3.0	1,337,714	1,299,052	38,662	-
2005년	2,148,094	1,495,400	3.1	1,425,684	1,384,155	41,529	-
2006년	2,410,452	1,616,000	3.2	1,449,832	1,334,731	115,101	-
2007년	2,647,355	1,674,000	3.2	1,463,140	1,338,224	113,711	11,205
2008년	2,941,686	1,596,352	3.2	1,530,000	1,302,625	122,120	19,265
2009년	3,224,800	1,632,298	3.2	1,569,000	1,338,091	133,219	20,008
2010년	3,195,600	1,632,000	3.1	1,549,820	1,458,198(시설수급자 91,622)		

2011년	3,189,600	1,605,000	2.9	1,469,000	
2012년	3,126,400	1,570,000	2.7	1,394,000	1,394,042(시설수급자 93,543)
2013년	3,404,973		2.6	1,350,891	1,258,582(시설수급자 92,309)

<표 4>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553,165 (8,768,934)	8,816,896	263,731	3.1	
기초생활급여	3,404,973 (3,432,975)	3,486,717	81,744	2.4	최저생계비 5.5% 인상(4/4분기)부양 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1. 생계급여	2,590,188 (2,609,090)	2,523,954	△66,234	△2.6 (△3.3)	○ 지원대상 : 128만 명, 77만 가구→ (상)123만 명, 74만 가구(하) 133만 명, 80만 가구 - 시설수급자 : 89→94천명
2. 주거급여	569,185	728,487	159,302	28.0	○ 지원대상 : 115만 명, 73만 가구 →(상)108만 명, 70만 가구, (하) 152만 명, 94만 가구 ○ 주요변수 - 주거급여 자격기준선: 중위소득 43% - 평균 급여액 8만원→11만원
3. 교육급여	129,481	111,053	△18,428	△14.2	○ 지원대상 : 26만 명 → 21만 명
4. 해산·장제급여	21,985	21,244	△741	△3.4	○ 지원대상 - 해산급여 : 3,914→(상)3,369, (하)3,597명 - 장제급여 : 34,239→(상)32,219, (하)34,399구
6. 양곡할인	92,344	100,109	7,765	8.4	
7. 기초생활보장관리	465	700	235	50.5	
8.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170	155	△11.6	
의료급여	4,248,347 (4,393,947)	4,437,054	188,707	4.4	
1. 의료급여관리	500	500	-	-	
2.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554	188,707	4.4	○ 기본진료비: 3,944,806→4,093,912 백만원 - 1,571천명(기초 1,448천명, 타법 1 22천명)
긴급복지	62,453 (97,120)	49,938	△12,515	△20.0	
자활지원	587,056	541,821	△45,235	△7.7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2,146	1,402	△744	△34.7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55,690	299,964	44,274	17.3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 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14 발표자료에서 인용함.

## 2)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현황

- 가구유형별 분포 : 일반가구(부모+자녀)를 제외하면(2010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중 높음. 한부모가구 중 여성한부모가구 많음.
- 가구원수별 분포 : 1인가구의 비중이 66%정도이며 2인가구가 18.0%로 1,2인가구가 전체가구 중 8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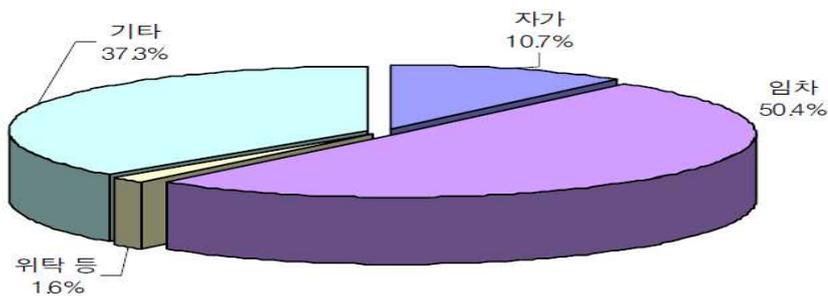
<표 5>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810,544
<b>노인가구 (29.0%)</b>	<b>238,790</b>	<b>240,030</b>	<b>244,565</b>	<b>242,470</b>	<b>245,935</b>	<b>243,132</b>	<b>244,529</b>	<b>243,708</b>	<b>237,213</b>	<b>236,617</b>	<b>235,601</b>
소년소녀 가장(0.8%)	13,932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6,945
모자가구 (9.4%)	66,636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76,270
부자가구 (2.3%)	17,158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18,366
<b>장애인가구 (21.7%)</b>	<b>112,987</b>	<b>123,418</b>	<b>136,892</b>	<b>144,747</b>	<b>154,066</b>	<b>162,527</b>	<b>171,330</b>	<b>173,322</b>	<b>173,751</b>	<b>174,112</b>	<b>175,867</b>
일반가구 (31.0%)	230,827	249,393	276,227	288,945	294,872	291,680	302,202	291,774	277,081	259,866	251,372
기 타 (5.7%)	37,531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46,123

<표 6> 2012년, 2013년 가구원수별 현황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2012년	가구수	821,879	<b>540,924</b>	<b>147,736</b>	80,900	34,494	11,272	3,168	1,358
	구성비	100	<b>65.8</b>	<b>18.0</b>	9.8	4.4	1.4	0.4	0.2
2013년	가구수	810,544	<b>543,295</b>	<b>143,392</b>	75,510	33,549	10,406	3,027	1,365
	구성비	100.0	<b>67.0</b>	<b>17.7</b>	9.3	4.1	1.3	0.4	0.2

<그림 4>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 기타 : 부분 무료임차(21.6%), 전체 무료임차(7.9%), 움막비닐하우스(0.4%), 무허가주택(0.8%) 등

## 5. 급여종류 및 급여방식과 급여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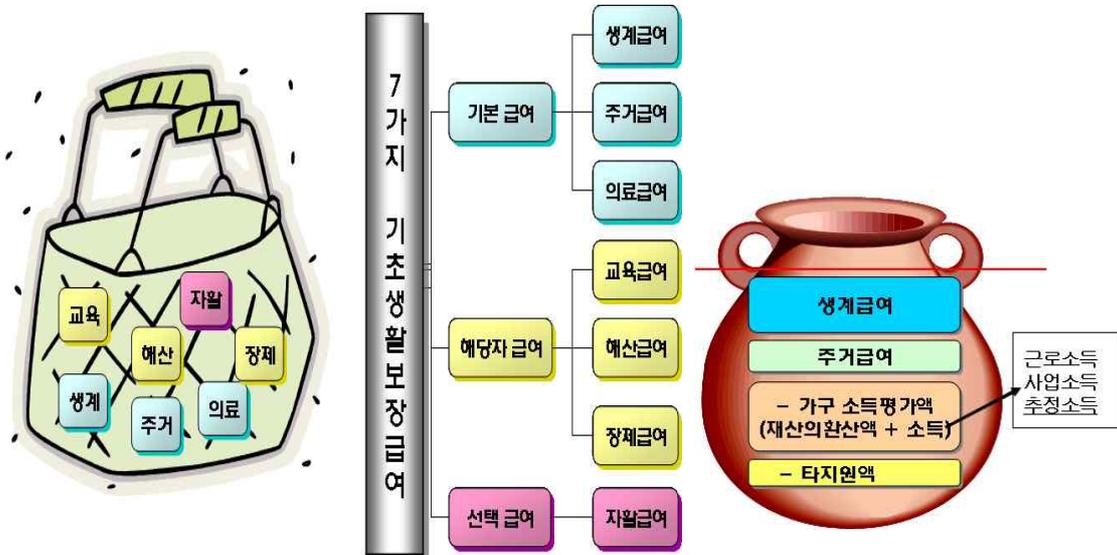
### 1) 급여종류, 지급방식 및 지급원칙

(1) 급여지급 방식 : 통합급여(all or nothing) → 수급가구가 되면 모든 급여를 받게 됨.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거의 모든 급여가 상실됨(통합급여). 따라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현금급여선을 상한으로 소득평가액을 따져 급여가 지급되므로(보충급여) 일을 기피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나게 됨. 이렇게 제도설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빈곤의 덩(자발적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

(2) 급여지급 원칙<sup>4)</sup>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음.

<그림 5>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구성



<표 7> 2014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25,920
-타지원액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2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생계급여	380,531	647,932	838,198	1,028,463	1,218,729	1,408,995	1,599,260

4)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후략)

※ 왜 최저생계비보다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현금급여)는 낮을까?

---

☞ 최저생계비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타지원액과 가구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분을 빼고난 후 현금급여액을 산정한다.

▪ 현금급여액(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등) -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4인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 : 식료품비(급식비 62,510원)+광열수도비(전기 6,346원)+의료비(보건의료서비스 32,138원)+교육비(65,930원)+가구집기가사용품(쓰레기봉투 1,220원)+교양오락비(TV수신료 2,500원)+교통통신비(유선전화 1,200원+이동전화 18,040원)+비소비지출(국민연금 38,610원+건강보험 24,390원+주민세 433원) = 타법지원액 **합계 : 4인가구 기준 타법지원액을 253,317원으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타지원액을 감액**

(2010년도 계획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 재산의소득환산액(자동차, 집, 저축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모두 수급가구의 소득으로 '인정'해 차감한다.

---

## 6. 수급대상

1)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없거나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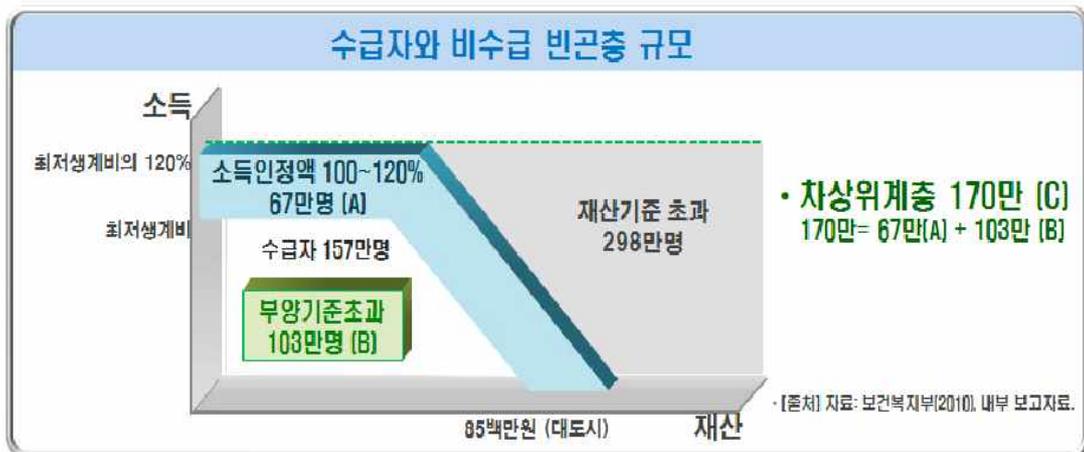
○ 기초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년 7월 삭제)

○ **"부양의무자"란** (제2조 5항)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가.

2)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온상 : 부양의무자기준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1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60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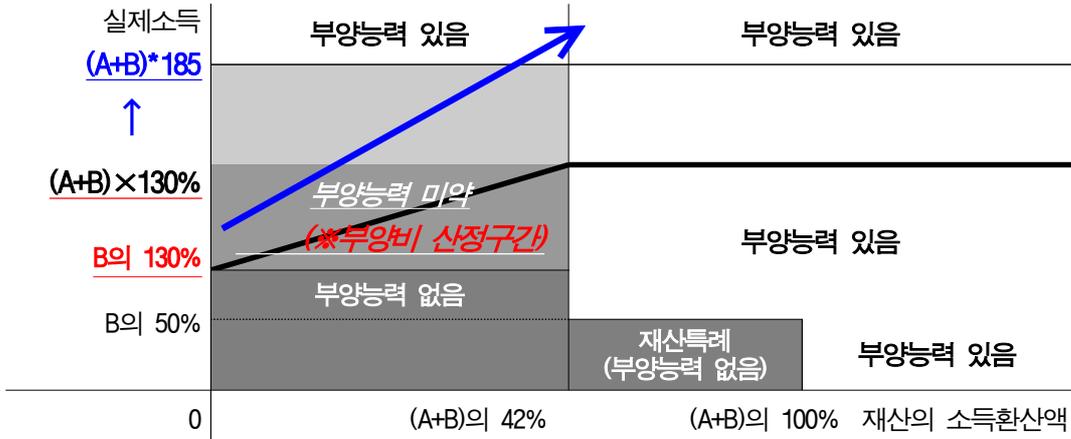
<그림 6>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 (정 의)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
  - (A)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는 67만명
  - (B)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03만명
  - (C) 차상위 계층 170만명 [67만(A)+103만(B)]
-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 초과자: 240만명

자료: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그림 7>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 구간변경 포함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A+B)×130% → (A+B)×185%로의 변경은 수급권자가구가 장애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일 경우에만 한정됨. 이는 **현행 간주부양비산정 구간의 확장만 도모했을 뿐임**. ① 부양능력있음의 구간에 있지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선보호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하며(※대법원 대구달서구청 상고기각판례 있음), ② ‘부양능력없음’ 구간의 상황이동이 있어야 함. 게다가 변경된 규칙의 시행에 있어서도,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보장의 효과-사각지대 포괄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 빈곤계층의 부양을 사적부문에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음<sup>6)</sup>

### 3) 소득인정액 : 소득으로 간주하는 모든 액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가구로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5)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란 명목으로 시작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는, 해당내용의 변경시행을 앞두고 2011년 5월 부터 9월까지 시행되었다. 결과 확인대상자(?) 38만명 중 3만3천명에 대한 보장이 증진되었고, 14만명은 급여가 삭감되었다. 급여중지 직후 수급자 사망사건 등 후폭풍이 거세져 '소명절차'를 당해 9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월 중순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4만3천명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하나, 9월말까지의 통계수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말 현재 여전히 수급탈락 혹은 삭감가구에 대한 통계수치와 사후 사례관리 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6)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없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족의 부양능력을 강조하고, 외국인의 경우 후원자(혹은 보증인)의 경제능력과 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한다. 독일의 경우는 민법 제1601조에 근거하여 직계자녀와 부모 간에 상호부양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 손 자녀 등은 시부모, 장인과 장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다. 누군가 사회부조 수급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회부조 전달 주체는 일단 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직계자녀 외에 다른 가족성원은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가족성원의 소득이나 자산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계산에는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철저한 핵가족 부양원칙을 갖는다. 즉, 부부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하여, 부부는 공식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동성 포함)을 의미한다(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표 8>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기본 공제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권)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3년간 총900만원 공제)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4.17%	6.26%	100%

○ **2013년 변경사항**

- **취약계층수급자 근로소득공제비율 확대** :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학생등 취약계층 수급자 근로활동을 인정, ① 65세이상노인과 장애인은 소득의 30%를 공제, ② 대학생은 3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 ③ 18세미만의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함.
- **이행급여특례**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해 취·창업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증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유지함.
- **주거용 재산기준 변경**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주거용재산으로 환산율(1.04%) 적용, 나머지재산에 대해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천8백만원	3천8백만원

예) 서울시 00구에서 사는 4인가구가 수급권자(근로능력가구)가 1억1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수급가구가 될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

- ① 주거용재산한도액 초과분 **1천만원을 일반재산비로** 계산 :  
1천만원\*4.17%=417,000원
- ② 거주목적의 재산인 **1억원(대도시 한도액)중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5천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주거용재산비율로** 계산 : 4천6백만원\*1.04%=644,000원
- ③ 이 가구의 월소득은 417,000+644,000=1,061,000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됨.
- ④ 계산된 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이므로 수급가구가 됨. 다만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추정소득부과분이나 간주부양비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현금급여에서 계산된 소득을 뺀 나머지 부분인, 60만원 정도를 수급비로 받게 됨.

-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 : 소유지분 적용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장애인무관)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변경 : 재산기준이 상향조정되고(대도시 2억8천, 중소도시1억3천6백, 농어촌1억150만원) 소득환산을 또한 주거용재산은 1.04%, 나머지 재산은 4.17%로 공통 적용함.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기초법 제1조)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공표하며(기초법 제6조), 이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판별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표 9>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사업 (2012년 11월말 기준)

선정기준	기준선	사업현황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기초생활(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애·해산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등
	최저생계비 120%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저생계비 130%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교육비, 한부모가족양육비, 이동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등
	최저생계비 150%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생활,의료) 등
	최저생계비 180%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자립, 상담) 등
	최저생계비 250%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소득	최저생계비 100%	긴급생계지원(재산 별도 산정)
	최저생계비 150%	긴급지원(교육, 해산비, 장애비, 주거 등),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대여 등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장애인자영업창업융자 등
	최저생계비 300%	소아암환자지원(재산별도 산정)
보수월액 (건강보험)	최저생계비 120%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30%	저소득층무료급식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50%	취업성공패키지 등

	최저생계비 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임신부영유아영양플러스 등
	최저생계비 300%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지원 등

○ 매해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인상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으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를 계측(계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음.

※ 최저생계비 계측과정 : 11개비목(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세금) 등의 비목)을 설정 → 비목별생활필수품<sup>7)</sup> 선정(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 **하위 40%이하?!**) → **표준가구선정(4인가구. 부모 40대, 자11세, 9세, 중소도시예 전세로 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을 조사하여 세부품목별 지출비용을 합함 → 비목별 소비지출액 도출하여 합산, 4인가구 최저생계비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산출

-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수준균형방식 혹은 상대빈곤선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표 10> 최저생계비 비교지표 (단위 :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최저생계비상승률		-	3.0	3.0	3.5	3.0	3.5	7.2	3.0	3.0	5.0	4.8	2.8	5.6	3.9
소비자물가상승률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5.4	3.0	4.0	-
체감물가상승률		2.4	3.7	5.1	2.5	4.0	4.9	4.1	3.1	3.1	2.8	2.1	3.4	4.4	-
<b>최저생계비대비현금급여율</b>		-							<b>85.5</b>	<b>85.5</b>	<b>83.7</b>	<b>83.3</b>	<b>83.7</b>	<b>81.9</b>	<b>81.9</b>
근로 가구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b>40.7</b>	38.4	36.4	35.4	33.7	31.8	33.4	3.26	31.2	30.9	<b>32.8</b>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b>45.5</b>	43.6	41.6	40.2	38.5	36.4	37.3	36.2	35.0	34.8	<b>36.8</b>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b>48.1</b>	44.6	42.6	42.7	40.5	38.5	40.2	38.9	38.1	37.3	<b>39.2</b>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b>57.8</b>	53.4	50.4	50.0	46.3	44.8	46.5	45.3	44.1	42.4	<b>45.7</b>	↓		
전 가 구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36.0	34.4	35.9	34.8	33.8	33.5	<b>34.5</b>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40.7	38.8	39.6	39.0	37.7	37.8	<b>38.3</b>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2.1	40.1	41.5	39.8	39.2	39.7	<b>40.8</b>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8.4	46.6	48.3	47.2	47.0	46.2	<b>47.9</b>	↓		

7)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한다.

<표 11> 최저생계비 인상률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b>2004년</b>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b>7.15</b>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b>2007년</b>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b>5.0</b>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년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현금급여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b>5.6</b>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b>3.2</b>
2012년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현금급여선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b>5.5</b>
	현금급여선	<b>488,063</b>	<b>831,026</b>	<b>1075058</b>	<b>1,319,089</b>	<b>1,563,120</b>	<b>4.2</b>
2015년	최저생계비	<b>617,281</b>	<b>1,051,048</b>	<b>1,359,688</b>	<b>1,688,329</b>	<b>1,976,970</b>	<b>2.3</b>
	현금급여선	<b>499,288</b>	<b>850,140</b>	<b>1,099,784</b>	<b>1,349,428</b>	<b>1,599,072</b>	<b>2.3</b>

- 최저생계비 계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과학적인지,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리고 활용이 적합한 것인지(최저생계비가 빈곤선으로 활용되어 공공부조의 급여선이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 개별급여선으로서의 논란, 즉 욕구별 급여가 적절히 수행되는 것인지가 쟁점사항이 됨.

<표 12>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피복 및 신발						57,649			
외의									
가장(40세)									

신사복	도시	동	12년	90,000	2벌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도시	춘추	12년	80,000	2벌	1,111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	1점	667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10년	20,000	2점	3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6년	20,000	2점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6년	15,000	2점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	2점	27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6년	20,000	2벌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잠옷겸용	6년	15,000	2벌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37세)										
숙녀복	도시	동	12년	90,000	2벌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도시	춘추	12년	70,000	2벌	972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	1점	667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스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바지	전국	동	9년	20,000	3점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9년	15,000	3점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	2점	27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10년	20,000	2벌	333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잠옷겸용	10년	15,000	2벌	250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11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	1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	1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	2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0,000	2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2년	8,000	2점	6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	1벌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하	3년	15,000	1벌	41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9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	1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	1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	3점	1,8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5,000	3점	1,875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동내의	전국		6년	8,800	3점	3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	9점	5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	9점	4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동내의	전국		6년	8,800	3점	3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	9점	5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	9점	4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직물, 실										
실	전국		6년	1,000	2타래	2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표 13>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품목	지역	계절/규격	내구연수	단가(원)	수량	중소도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육비						65,930			
<초등학생-11세(남)/9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3,408	4권	7,803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문제집	전국	1,2학기 각 1인당 1권	1년	12,320	4권	8,213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 (1종*6월/인)	1년	22,000	12월	32,000	통계청 2009 사고 교육비조사	통계청 2009 사고 교육비조사	실태조사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45,000	1회	7,5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기타 교육비	전국	아외학습 및 특별활동	1년	10,000	2회	1,6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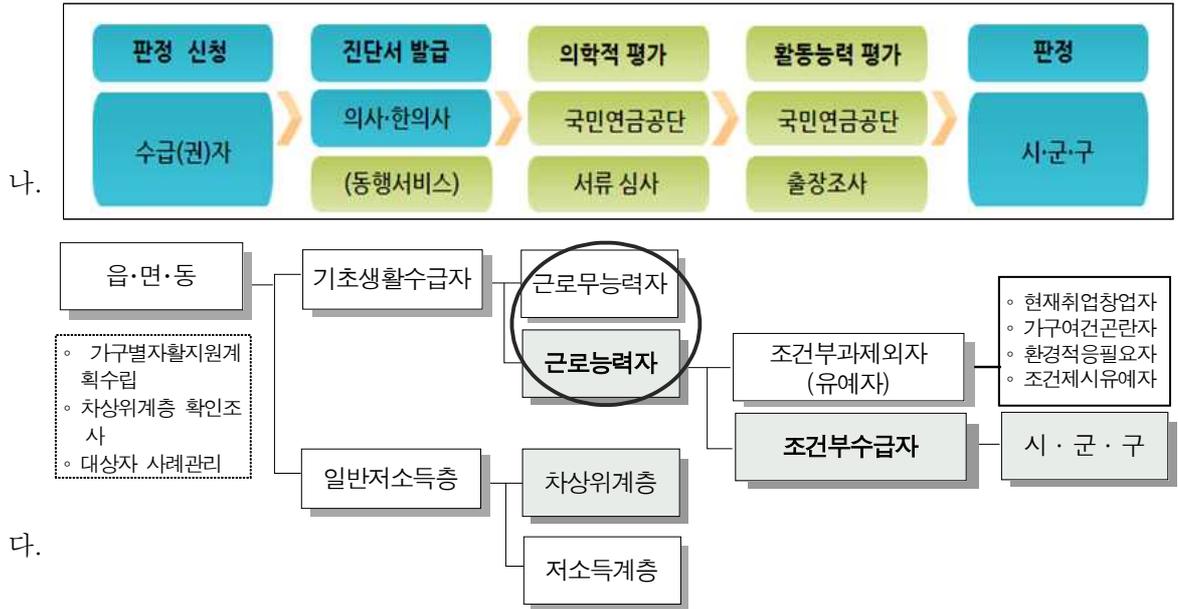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 (1타스/인)	6월	2,265	2타스	755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싸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	4개	8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색연필	전국	12색 (1세트/인)	1년	2,500	2세트	41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 (9권/인)	6월	548	18권	1,644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 (2권/인)	1년	1,206	4권	402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665	1권	444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크레파스	전국	24색 (1세트/인)	1년	3,668	2세트	611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그림물감	전국	12색 1세트	1년	2,851	1세트	238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	1세트	188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	4개	2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	1개	1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가위	전국	중	2년	700	1개	29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풀	전국	중간크기 (1개/인)	6월	500	2개	1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색종이	전국	양면(10개/인)	6월	500	20개	1,6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 (1개/인)	1년	1,500	2개	25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교육용 약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2,000	1개	56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1개/인)	1년	200	2개	3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	2개	83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표 14> 최저 교양 오락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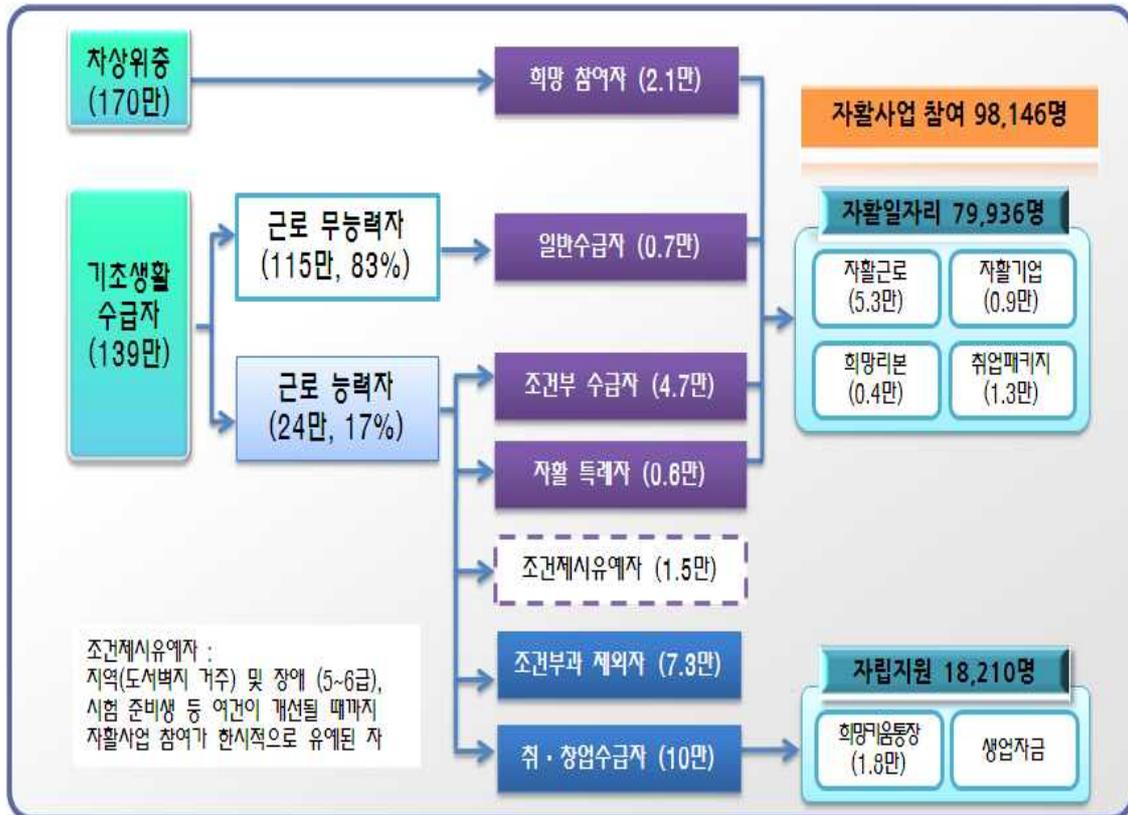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 (원)	수량	중소도 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양오락						27,117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9,823	1권	819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태조사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204	4권	2,068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태조사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29인치 (일반형)	10년	260,000	1개	2,167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카세트 라디오	전국	CD겸용	10년	70,000	1개	58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비디오	전국	VTR 4헤드	10년	130,000	1개	1,08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카메라	전국	자동카메라 (일반형)	10년	40,000	1개	33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컴퓨터	전국	중저가(보급형) /모니터 포함	6년	551,000	1개	7,65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10년	60,000	1개	500	전자제품 소비형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프린터 잉크	전국	재생/호환잉크 (리필형)	1년	7,000	1개	583	전자제품 소비형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필름	전국	24매	1년	2,500	2통	417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완구	전국	초등학생용 장 난감 1인/2개	1년	4,000	4개	1,33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CD	전국	음악용	1년	12,000	1개	1,000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1회)	1년	8,169	2명	1,362	문화관광부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전국	아동(2인/1회)	1년	7,501	2명	1,250	문화관광부	시장조사	실태조사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전국	가정용 TV	1월	2,500	1회	2,500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장조사	방송법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전국	고궁 및 박물관 (성인2,아동2)	1년	9,000	2회	1,500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 3×4cm	5년	10,533	1조	176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전국	사진현상 (24매)	1년	7,073	2통	1,179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비디오 테 이프 대여	전국	신판	1년	1,834	4회	611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 4) 근로능력판정

<그림 8> 근로능력판정 체계 및 판정과정



<그림 9>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12년말)



## [2장]

### 7.개편되는 개별급여, 주거급여 어떻게 볼 것인가?

#### 1) 주거급여의 변천과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

○ 종전 기초법 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기초법 제7조 7항에 기초법상 급여로 명시,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됨.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기업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2.2.14]

○ 개정된 기초법상 주거급여의 내용과 주거급여법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 <기초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7.1> 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거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음.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음.

<표 15> 주거급여의 변천 (단위: 원)

년도	급여 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2년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액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최저주거비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자가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2003년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액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54,000
	자가	22,400	22,400	28,700	28,700	37,800	37,800
2004년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액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5년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액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최저주거비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6년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7년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최저주거비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8년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주거 급여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95,292
		자가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 <sup>8)</sup> ”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09년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주거 급여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10년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주거 급여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주거 급여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2012년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주거 급여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주거 급여	차가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1%)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주거 급여	차가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82%)				
20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주거 급여	차가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0%)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년도.

☞ 현금급여 중 약 20%를 주거급여로 설정해두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8) “자가가구 등”의 범위 ①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③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④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⑤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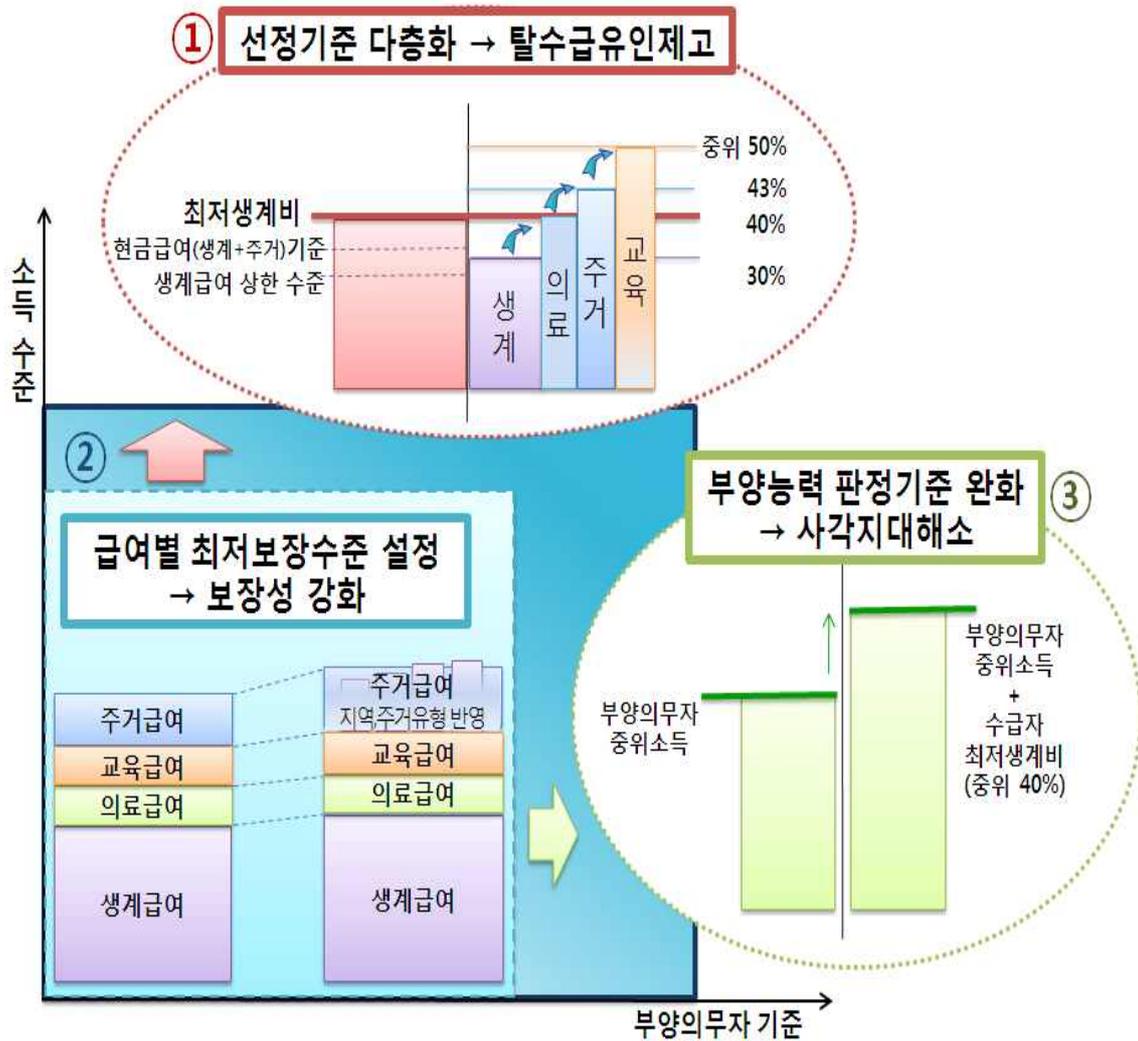
○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바를 정리하자면,

- 가장 먼저 지적되는 주거급여의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임.
  - 2013년 기준 수급가구 중 60% 이상이 보증부월세 혹은 무보증월세의 임차가구인데(공공임대 19.8%)임. 민간임대주택 1인가구만 하더라도 2014년 기준 10만원정도의 주거급여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월임대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 다음은 대상효율성의 한계임. 즉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행하였는가’의 문제**로서 급여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한가의 문제였음.
  - 이에 소득대비 주거비지출비율 등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등 목표중심의 대상자 선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이나 가구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특구 실현에 대한 한계**임.
  - 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면서 주거급여 기준선이 되는 최저주거비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해 도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저주거비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주거비를 적용해 일괄하여 발표하였음.
  - 기초법은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기초법 제4조 2항). 이러한 개별성 원칙에 충실하려면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급여의 형태가 구현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만 고려할 뿐 지역(급지)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였음.

## 2) 변경되는 주거급여의 내용

- 박근혜정부는 ‘맞춤형’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급여를 분리하고 급여별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하였음. 특히 아래의 사유를 들어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추진(임차가구 지역별, 가구별 지급/자가는 주택개량 위주)한다고 밝혔음.
-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낮고, 예산이 과다해서), 전세자금융자 등은 전세에 한정되고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지원되지 않으며,
- 현행 주거급여가 거주형태(임차, 자가)와 임대료수준에 무관하게 일괄지급되고, 실질적인 주거비지원의 한계가 있고, 민간임차주택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중위소득 50%이하 월세가구 64.5%, 소득하위 20%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이 41.7%이달함),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림 10>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계획



- 이러한 계획 하에 2013년 말 <주거급여법>을 통과시켰고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별도의 제도로 독립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sup>9)</sup> 2014년10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sup>10)</sup> 2014년 기존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마쳤고, 곧 개별급여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

○ 개편 내용

- 14년 7월~9월 시범사업 시행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현행 중위소득 30%수준에서 43%로 크게 인상
- **지급대상 확대 '73만 가구 → 93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만원 → 11만원'

9)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가 시범지역이었다.

10) 주거급여의 본격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거급여의 시행은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미 재정편성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는 것은 기초법의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로도 읽혔다.

- ① 임차가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②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6~7월 공청회 후 확정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됨.
- \* (시범업 급여액) 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 \* (개편 급여액)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 8월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 대해 평균 5만4천원을 추가지급하게 되는데, 7월(수혜가구 2만6천, 평균 5만원 추가지급) 대비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의 다소 증가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
-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 \*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 시행 어렵다는 보도 배포(7.24)
-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됨.**
-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임.

주) 개편주거급여 및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는 국토부 보도자료.

### 3) 검토할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

- 개별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금급여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주거급여일 것임. 따라서 어느 선에서(자격기준), 어떻게 주거욕구를 충족할 것인가(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임. 다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함.
- 라.
  - 마. (1) 선정기준은 적절한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 중위소득 40%는 2013년 최저생계비선 정도로 논의되다가, 지난 해 10월 최종적으로 43%로 결정해 발표(차상위 이하의 선임)됨<sup>11)</sup>
  - 중위소득 43%선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즉 차상위 소득선 보다 낮은 기준선임.(제도 설계과정에 있던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함)

<표 16> 201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분포 (단위 : 만원, %)

11) 개편안은 중위소득40%, 45%를 지원대상의 선으로 설정하고 중위소득 40%로 설정할 경우 146만5천가구, 중위소득 45%이하로 할 경우 169만5천가구로 추정하고 있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42	242	313	384	455	527
중위소득 50%	71.0	121.0	156.5	192.0	227.5	263.5
<b>중위소득 43%-주거</b>	<b>61.1</b>	<b>104.1</b>	<b>134.6</b>	<b>165.1</b>	<b>195.7</b>	<b>226.6</b>
중위소득 40%-의료	56.8	96.8	125.2	153.6	182.0	210.8
중위소득 30%-생계	42.6	72.6	93.9	115.2	136.5	158.1

<표 17> 2013년도 기초보장 급여수준 및 복지지원기준선 (단위 : 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현금급여	46.8	79.8	103.2	126.6	150.0	173.5
<b>차상위(120%)</b>	<b>68.4</b>	<b>117.7</b>	<b>151.2</b>	<b>185.6</b>	<b>220.0</b>	<b>254.2</b>
한부모(130%)	-	133.5	172.7	212.0	251.2	290.4
긴급지원(150%)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표 18> 2015년 1월~6월 적용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차상위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현금급여(원)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주거급여(원)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b>차상위(120%) (만원)</b>	<b>74</b>	<b>126</b>	<b>163</b>	<b>222</b>	<b>236</b>

<표 19> 2015년 7월~12월 적용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생계급여28% (최저생계비80%선)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40% (현행동일)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b>주거급여43% (지역별기준임대료)</b>	<b>671,805</b>	<b>1,143,884</b>	<b>1,479,787</b>	<b>1,815,689</b>	<b>2,151,592</b>
교육급여50% (현행동일)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출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또하나의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이 종전 기초법을 준하고 있어 대상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임. (<주거급여법> 제2조5항과 제5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7.1.] 제5조

- 부양의무자기준을 넣을 경우, 임차가구는 82만5천가구로 추정.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가구는 76만가구이므로 대상자확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임.
-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할 것임.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해야 할 것임.** 현재 부양의무자조사로 인한 신청당시 장벽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일 것임.
  - 바.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합당한가?
- 앞서 살펴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1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60가구)임.**
  - 기존 완화된 규칙 시행에는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보장의 효과-사각지대 포괄효과-는 미미했음. 근본적으로 빈곤계층의 부양을 사적부문에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이 계속되었음.
  -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4인가구 422만원 2015년 상반기기준)으로 설정해두었음.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수급(권)자의 몫이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1.9.8.]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가 부양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원이 없거나 지원받은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의무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에 대한 입증 ① 기본자료 :** 공무원의 사실조사복명서, 수급(권)자는 소명서와 지출실태조사표, 1년간 통장 입출금내역제출, 소명서가 용이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웃주민이나 통반장이 확인서로 대체, 시설수급권자는 시설장의 확인서로 대체, ②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사유서, 수급(권)자 최근 6개월간 유무선 전화기 통화내역서**

○ (간주)부양비 산정의 문제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며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함.(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이거나 친정부모 가구의 경우는 15% 부과). 부양비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제도 설계상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간주 부양비라고 불리고 있음. 실제 받는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됨.

○ 구상권 청구

- 구상권(求償權) :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사.

아. (2) 급여수준은 적정한가?

○ 종전 가구원수별 급여에서 지역현황을 고려, 급지별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음.

- 색이 칠해진 부분은 기존 주거급여보다 낮아지는 가구임. 급지가 낮아질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기존 주거급여액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임.

<표 20> **개편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윗칸은 시범사업기간 발표한 기준임대료)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세종)	4 (그 외 지역)	현행주거급여
1인가구	170,000	150,000	120,000	100,000	107,532
	<b>190,000</b>	<b>170,000</b>	<b>140,000</b>	<b>130,000</b>	
2인가구	200,000	170,000	140,000	110,000	183,094
	<b>220,000</b>	<b>190,000</b>	<b>150,000</b>	<b>140,000</b>	
3인가구	240,000	210,000	170,000	130,000	236,860
	<b>260,000</b>	<b>230,000</b>	<b>180,000</b>	<b>170,000</b>	
4인가구	280,000	240,000	190,000	150,000	290,626
	<b>300,000</b>	<b>270,000</b>	<b>210,000</b>	<b>190,000</b>	
5인가구	290,000	250,000	200,000	160,000	344,391
	<b>310,000</b>	<b>280,000</b>	<b>220,000</b>	<b>200,000</b>	
6인가구	340,000	290,000	240,000	190,000	398,157
	<b>360,000</b>	<b>330,000</b>	<b>250,000</b>	<b>230,000</b>	

☞ 가구원수와 급지를 고려해 변경하면, 1인가구 1급지는 8만3천원정도, 2급지는 6만5천원정도, 3급지는 3만3천원정도 상승되고, 2인가구는 1급지 3만7천원정도, 2급지 7천원정도, 3인가구는 1급지 2만6천원정도 상승, 그 외 모든 가구는 주거급여가 하락함.

○ 급여계산식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예1) 대구시에 거주하는 김00씨는 2인 여성한부모 가구이다. 식당일을 하면서 버는 근로소득은 80만원 정도.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구는 얼마의 주거급여를 받게 될까?

- ① 가구소득은 주거급여 2인가구기준 114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임.
- ② 다만, 월 소득 80만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인(중위소득 28%) 74만원을 넘기 때문에 자기부담분이 생김. - ※ 생계급여대상자는 아님.
- ③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이므로, (80만원-74만원) × 1/2 = 3만원
- ④ 대구시 2인가구 최대 주거급여액 16만원에서(※ 보증금은 4%로 환산하면 연간 12만원, 따라서 매월 1만원의 주거급여가 발생하게 됨. 이 부분을 포함한 최대주거급여액을 계산하였음). 3만원을 제외한(자기부담분) 13만원이 이 가구의 주거급여가 됨.

예2) 이00씨는 55세 1인 단독가구이다. 현재 일반수급자로 가구총소득은 49만원 선이다. 현재 대구 고시원에 거주(무보증월세 18만원)하는 이 가구의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 ① 가구소득은 주거급여 1인가구 중위소득 43%인 67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임. ※ 일반수급자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자임.
- ② 3급지 1인가구 최대급여액은 14만원이다. 이 가구는 기준임대료만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주거급여액은 14만원.
- ③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인 43.7만원(선정기준=지급액) + 주거급여 14만원 = 58만원이 해당 가구의 총소득이 됨.

○ 한편 실제임대료(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정부가 정한 지원임대료 상한선)보다 낮은 경우 급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임대료지원액수가 감소(실질임대료가 낮아서)해 총지원받는 급여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이 또한 낮은 생계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제도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구임<sup>12)</sup>.
- 실제로 개편안에서는 급여감소가구의 상당수는 공공임대거주 6.7만가구로 보고 있음. 뿐만 아니라 4급지에 위치한 가구의 경우에도 8만가구가 감소의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이행급여를 편성해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 주거)의 감소를 보전, 급여가

12) 실제로 제도개편안의 소요예산추계를 보면, 중위소득 40%로 할 경우 1조 2,586억원 정도를 예측했으나 단서로, 수급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가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예산이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자연상승분을 통해 상향조정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함.

<표 20>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201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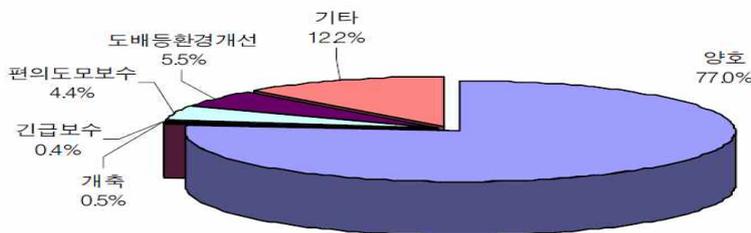
【주거유형별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계	자가	무주택									
			임 차					위 탁				기 타
			소 계	전 세	월 세	보증부 월세	영구 임대주택	소 계	가정 위탁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가구수	810,544	86,822	408,568	66,177	118,397	123,812	100,182	13,256	995	9,582	2,679	301,898
구성비	100	10.7	50.4	8.2	14.6	15.3	12.3	1.6	0.1	1.2	0.3	37.3

※ 기타: 부분무료임차(20.2%), 전체무료임차(6.9%), 움막비닐하우스(0.6%), 무허가주택(0.8%) 등

<그림 12> 수급가구 주거상태 현황



(3) 바우처방식의 활용? 우려되는 행정고시(주거급여사업안내)

- 국토부는 행정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 걸쳐 **임차급여 지급증지에 대한 확인, 급여의 중지를 명시하고 있음.**
- 월차임 연체사실의 신고를 임대인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수령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받게되면 재급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9조(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①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월차임 연체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③ 제1항의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공통서식 별지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일부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대인의 신고)** 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신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 국가가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로 판단됨. 특히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신청서(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기관의 확인까지 생략하는 것은 수급자의 “급여수급권”을 배제한 행위임.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위배조항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제9조1항은 “조사기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월차임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로 규정을 요함. 아울러 월차임에 대한 연체기간 3개월은 빈곤가구에 대한 현실상 맞지 않음. 특히 민간임대 임차료는 기준임대료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비 등이 과다지출되는 경우(※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다수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가구가 비일비재함. 해당 조항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한 것. 1,2,급지의 민간임대주택 현실에 맞지 않는 기간임. 제10조 1항의 경우 연체사실의 확인 이후 주거급여수급가구의 소명절차가 우선이 되어야함. 아울러 이에 대한 중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기초법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함)이 첨부되거나 기초법에 준해 운용되어야 함.

※ 종전 기초법 운영 중 소명절차 없이 즉각적인 급여중지가 있는 이후 생계비와 주거비가 중지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수급자가 연이어 발생했음.

- 임차급여의 재개 혹은 수급자 명의로 재변경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월차임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수령하는 경우 재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임차인의 권리보장방안(소명절차나 실태조사 없음)은 전무, 확인과 급여까지 임대인에게 맡기고 있음. 주거급여가 임대인의 월세보장을 위한 방안으로까지 보임.

**제12조(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임대인 명의로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로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급여를 임대인 명의로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제10조에 따라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제12조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제16조(공공기관등에 대한 임차급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 명의로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 명의로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LH 혹은 SH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급가구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이 부분에서 현금급여를 바우처방식인 현물급여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임. 현행 생계급여의 대폭상승이 없는 한 이는 수급가구의 박탈감을 줄 것임. 아울러 민간임차가구와의 차별도 보임.**
  - 사실상 위와 같은 행정고시(시행규칙) 조항은 현행 생계급여에 대폭 수정과 상승, 그리고 의료급여의 확대가 없이는 수급가구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임.
  - 주거복지센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주거비지원(특히 연체된 체납월세액)을 요하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교육비, 혹은 아동이나 노인, 환자를 포함할 경우 계절적 특성인 동절기 연료비의 지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체납기간은 3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임.
  - 요컨대 이러한 조항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주거조건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인지, 소득보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로도 파악됨.
- 자.

#### (4) 권리구제는 문제없는가?

- <주거급여법> 14조에는 급여신청의 각하와 급여의 중지<sup>13)</sup>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는 별도의 명시 없이 기초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14조(급여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기초법상 행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는 두 번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한번은 시도에, 다른 한번은 복지복지부장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주거급여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의신청은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두고 있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얼마나 신속히,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됨.
- ‘부처 간 업무협조’ 혹은 ‘주거급여보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한 주거비가 체납되어 주거 퇴거위기에 놓인 수급(권)자의 주거보장을 신속히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5)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점

- **개별급여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 역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을 편성(현재 LH에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 지난 정부가 구축한 행정망의 보급은 업무정확도와 효율성을 증진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관리업무의 증가와 깔때기 현상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례관리 인력조차 확보되지 못했음. 복잡성을 띄는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한 사례발굴과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LH 전국 총 49개 사업소 설치, 1,580명 투입(이중 정규직 전환 12% 기간제현장조사원 1073명, 업무보조직 310명)

-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100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경우 1인당 1천300가구 정도를 커버해야한다고 함.<sup>13)</sup>
- 한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전담인력을 채용했으나, 실제 시범지역 실태조사내용과 이후 조치를 보면, 가구체납현황, 체납사유 등에 대한 조사 등은 없음. 따라서 실태조사 이후 사후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편적인 작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3) 미국의 주택바우처업무는 담당자1인당 연간30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주거급여 소요인력은 약 1,200명~1,300명으로 보고있음.

☞ 조사의 목적, 무엇인가? 수급선정기준만 볼 것인가,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것인가?

- 제대로 된 조사,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업무'에 방점을 둔다면 실태조사 외에 욕구와 문제, 자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6) 제도개편, 과연 낙관적일까?

- 제도개편 안에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상향이동을 전망하면서,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허나 그 근거는 없음. (기준)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괜찮은(?) 주택으로 상향 이동할 가구가 얼마나 되며, 더군다나 ‘그러한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민간임대주택시장에 얼마나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 없음.
- 현행 주거급여에서의 관건은, 대도시 민간임대주택에(쪽방, 고시원 등 무보증월세의 거처 포함)서 생활하는 주거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가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출발함. 이는 거리노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음.
- 홈리스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임. 즉 저소득 빈곤가구의 대다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물량이 적어 입주기회가 없었거나,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조차 포기하거나, 혹은 정보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고,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개별욕구에 대한 인정도, 대상효율성을 위한 운용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도 달성하지 못해 제도가 목적하던 바,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그러하다 하겠음.
- 임대료보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되려면 주택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함.
- 즉 저렴한 거처를 찾아야하는 사람들(주거급여의 대상자 혹은 주거비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한정된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공공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임대료만 상승하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제도개편의 근거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스톡 파악과 규제책에 대한 것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함.
- 서구사회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정부분 확보된 이후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게 됨(홈리스지원책의 경우 임대료보조와 동시에 임대료규제 및 적정수준의 주택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함)

(가) [참고 1]

차상위 등 저소득에 대한 정부정책 및 서비스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 하단 저소득층(빨간 사과 모양 클릭~)

저소득층

<p><b>기초생활수급자</b> 전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gt;</li> <li>(기초생활)생계급여 &gt;</li> <li>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gt;</li> <li>교육급여 &gt;</li> <li>노인복지보철(보건소 의치(틀니... &gt;</li> </ul>	<p><b>차상위계층</b> 전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gt;</li> <li>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gt;</li> <li>고교 학비 지원 &gt;</li> <li>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gt;</li> <li>급식비 &gt;</li> </ul>	<p><b>긴급복지</b> 전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 교육지원 &gt;</li> <li>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gt;</li> <li>긴급복지 생계지원 &gt;</li> <li>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gt;</li> <li>긴급복지 의료지원 &gt;</li> </ul>
<p><b>모의계산</b> 전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 &gt;</li> <li>장애(아동)수당 &gt;</li> <li>초·중·고 교육비지원 &gt;</li> <li>한부모가족지원 &gt;</li> </ul>	<p><b>관련정보</b> 전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려드립니다.</li> <li>☑ 세계감염 혜택</li> <li>☞ 복지상담 129</li> </ul>	

(나)

구분	구분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노인등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 (외출 등), 정서적 지원 (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소득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
2	노인의치보철 (보건소 의치[틀니])	전부의치 : 1,028,000원(편약기준), 부분의치 : 1,836,000원(편약기준), 지대치 등
3	독거노인U-CARE 시스템 운영	취약독거노인 대상으로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버튼 등)
4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5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 30,000원
6	<a href="http://livewithyou.tistory.com">http://livewithyou.tistory.com</a>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이면서차상위계층 : 매달 15만원 경증장애인이면서차상위계층 : 매달 10만원
7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종별, 등급에 따라 18종 품목의 보조기구 지급
8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9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검사비 :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10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당 3,800,000원(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마당포장, 경사로 등) *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제거작업

구분	구분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1	정신보건센터운영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등 진료비 보조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수업료지원
13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돌봄 서비스
14	방과후 보육료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 아동 : 보육료의 50%인 197,000원 지급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15	초·중·고 학생 교육정 보화 지원	PC 지원은 1세대 1대(초·중·고)를 현물 지원, 인터넷통신비 매월 17,600원 상당,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16	초등돌봄교실	오후 돌봄은 1~2학년 초등학생 방과후부터 17시까지 돌봄 저녁 돌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17시부터 22시까지 돌봄.
17	학교우유급식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동안 무상으로 지원
18	고교학비지원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a href="http://livewithyou.tistory.com">http://livewithyou.tistory.com</a>
19	급식비 무료지원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0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치료비지원	기숙치료학교, 가족캠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 * 일반 청소년은 최대 30만 원,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청소년은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21	문화통합이용권	문화누리 카드 사업으로 세대카드는 1매당 10만 원, 청소년 추가 카드는 1매당 5만 원, 복지시설 거주자 1매당 5만 원 지급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시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원
22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응급처치,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소방,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23	발달재활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24	언어발달지원사업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에 대한 지원액을 바우처로 지급

구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2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효율조명기기(백열전구,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
2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기교체지원
27	서민용가스시설개선	LPG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 (지원금액 가구당 19만1천원상당)
28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29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거나 내부 세척, 코팅해 수도관 갱생
30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난청노인용 수신기 지급
31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지급(자막방송수신기)
32	사랑의그린PC보급	사랑의 그린PC 무상으로 보급
3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 지원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등,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5	희망리본사업	교통비, 식비, 교육비등의 1인당 최대 연간100만원(단, 교육비로 40만원이상활용)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36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취업)제공, 월급 1,089,000원임
37	자활근로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근무 후 35,700(37,700)원을 지원 인턴형 참여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급 35,70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참여자 :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급여는 32,300(34,300)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근무에 일급 24,080원
38	양곡할인	정부양곡구입시 50%할인
39	풍수해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34	연탄현물(쿠폰)보조	연탄쿠폰은 1년에 한 번 배부, 쿠폰은 1매에 169,000원 보조

○ 서울형 주택바우처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가구(전입신고) / 민간임대주택</li> <li>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li> <li>지원기간 : 계속지원</li> </ul>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li> <li>1인(43,000원), 2인(47,500원), 3인(52,000원), 4인(58,500원),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 임대주택에서,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신청</li> </ul>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관리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li> </ul>

[참고 2]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7.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유지·수선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유지·수선비(이하 “유지·수선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유지·수선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유지·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유지·수선비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부터 제27조의2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다.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수선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유지·수선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급여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입(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 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①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수선비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의 시행일 이전에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를 적용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참고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도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 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임차급여

**제5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2촌 이내의 혈족인 비수급자와 주택등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 2촌 이내의 혈족이 그 주택등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수급자가 체결

한 임대차계약서로 본다.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로 한다.
-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 ④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한 달과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한다.

- ②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잉지급분을 반환토록 한다.
-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5조 및 제6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수급자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에 따른 임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①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월차임 연체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③ 제1항의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공통서식 별지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급여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신고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13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제10조에 따라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제12조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제14조(임대인의 신고) 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신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명령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기관등에 대한 임차급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도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수급자의 조사거부 등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는 서면으로 공통서식 별지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부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수선유지급여

**제18조(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를 구분하는 주택노후도 점수 기준은 전체 주택의 노후도 분포 등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및 수선주기, 주택노후도 점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차등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 주택상태 또는 규모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의 20%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수선은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⑦ 수급자는 본인 및 본인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등을 수선하기 위하여 수급자 이외의 자료부터 수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선유지급여 지급 특례)** ① 수급자의 주택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2.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선주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②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③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제22조(수선내용 등의 조사)** ①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내 이미 수선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다음 번 보수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급번 수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보수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수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다음 해 보수 물량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③ 대보수 수선대상으로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아직 수선을 받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 주택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예비자를 포함한다),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다.

**제24조(긴급보수의 실시)**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심각한 누수·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는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를 적용받는다.

**제25조(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선유지급여 업무를 의뢰받은 기관은 경보수에 해당하는 주택등의 수선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

**제26조(조사기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신청조사 의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득인정액(금융재산 제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8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뢰에서 제외된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금융재산 포함)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뢰 시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28조(확인조사 의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체 수급자에 대한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부정수급 제보, 민원 등으로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29조(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2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2.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3.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4.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5.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③ 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30조(신청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3.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방수·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수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1조(확인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차임의 연체여부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32조(조사방법)** ①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신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에 비추어 방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제29조 제2항 각 호의 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사용대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다.

⑥ 조사기관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대한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조사결과의 통보)** ① 조사기관은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연간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지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방해·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또는 수급

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5조(그 밖의 사항)**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이는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임대인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수급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다만 이는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공표에 관한 적용례)** 2015년도의 최저보장기준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3호, 2014.03.07)」는 폐지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개정안과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짜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해리하고, 복잡한 절차로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개악안이라고 평가하는 바다. 기초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법 개정 요구에 대해 신는다.

### 0. 한국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법

#### 1) 한국의 빈곤 현실

‘빈곤’은 가난한 상태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국가 중 6위, OECD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그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며, 생계고를 비판한 자살이 전체 자살원인의 2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재정지출은 OECD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3%에 불과하며, 복지선진국인 25.2%에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진다. 이는 전체 OECD국가 중 최하위다. 현재 800만 이상의 빈곤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13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400만명 이상으로, 마지막 복지 안 전망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분위기와 정책의 영향이다. 그러나 4대 보험등의 기본적인 사회보험으로부터 제외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높은 교육비와 집값, 의료비 등은 갈수록 많은 이들을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한번이라도 상대적 빈곤선(실질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이하의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5%로 3가구 중 1가구다. 이 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한번이라도 떨어졌던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족은 26.7%나 된다. 중위소득의 60%이하의 소득으로 떨어졌던 가구는 무려 43.5%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을 경험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 (1)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우리사회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가 매우 크다. 2013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814만 5,000명 중 상용근로자는 1,161만 6,000명, 임시직 노동자는 652만 9,000명이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8.1%, 건강보험 가입자는 71%, 고용보험 가입자는 66.7%에 불과하며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비임금노동자, 실업자 및 비경제 활동인구와 같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을 포함하면 사각지대의 규모는 훨씬 크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작은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송과 세모녀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식당 노동을 통한 임금 150만원으로 세 식구가 생활을 꾸려갔으나 팔을 다쳐 일자리를 잃자마자 극심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들 가구에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없었으며 고혈압에 시달리는 첫 딸은 의료보험 가입자였으나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가난한 가구에겐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가 작동해야하지만 이들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추정소득 부과 등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려는 관성이 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은 빈곤에 빠져들기 쉽게 만들기도 하지만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의 빈곤 탈출율은 2006년 35.43%에서 2007년 33.24%, 2009년 31.2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주요 17개국 평균인 39.2%보다 낮은 반면 진입률은 OECD평균 진입률보다 4.5% 높다.

### (2)확대되는 불평등

우리나라는 빈곤과 불평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부유층의 소득,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의 소득, 자산은 급격히 감소해왔고 빈곤층의 숫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다수 국민의 '빈곤화', '소득불평등 심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표로 확인해볼 때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율은 63.1%에서 2011년 71.8%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6년 61.3%를 최고점으로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하락해 2011년 59.0%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뜻한다. 노동자 내부의 임금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비중은 2000년 53.5%에서 2012년 8월 49.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 임금격차는 73만원이었지만 2010년 3월 이후 이는 14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OECD는 중위임금 2/3미만의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

동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2012년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월 120만원 미만 노동자다.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는 24%가량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이나마도 받지 못하는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명으로 9.6%에 달한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주당 40시간 노동할 때 1,088,890원이다. 이러한 저임금은 초과노동을 강요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게 한다. 최저생계비의 절대적 인상은 노동소득의 분배를 개선시키고 빈곤진입 가능성을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

###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997년 IMF로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들어졌다.

### (2) 기초생활보장제도 연혁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00. 10. 1일부터 시행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공적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자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가동 2013년 완료<sup>14)</sup>.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2013년 7개 광역자활센터와 248개 지역자활센터 편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소득·

14)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2010년 1월부터 가동된 정부 전산망이다. 사통망에는 과거 국세청·국토해양부·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 재산,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복지사업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내용은 개인별·가구별로 종합해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 (3)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기초법은 종전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①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성을 강화했고<sup>15)</sup>, ② 인구학적 기준 삭제 등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③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④ 급여수준의 향상<sup>16)</sup>과 주거급여항목 추가하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도 도모했고, ⑤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가했음. 이로써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방식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0년 현재)
인구학적 기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근로무능력자	폐지	폐지
자산기준		소득기준/재산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지 않아 소득/재산 기준 활용	최저생계비 기준 *’02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공제액이 결정되어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기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판정 기준	보호대상자와 부양가구의 가구원 1인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30% 미만
선정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 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15)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특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되어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는 제도는 제3조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6)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보호 수준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중위소득 40%내외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4) 기초생활보장법의 현재

기초법은 1999년 제정, 2000년 도입되어 한국사회의 유력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능해왔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어 슬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기준 상대빈곤율은 14.0%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 2009년 157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줄어든 수급자 숫자는 ‘탈 빈곤’이 아닌 ‘탈 수급’만을 의미하고 있어 더욱 염려된다.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은 한국 빈곤정책의 고질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 ▽ IMF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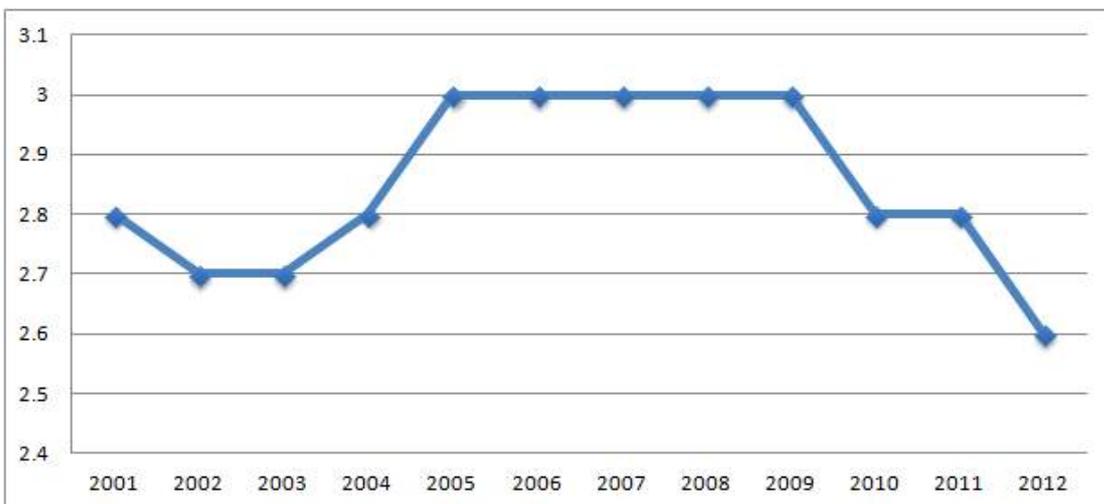
구 분	절대빈곤 <sup>1)</sup>	상대빈곤 <sup>2)</sup>
1996	3.0	9.0
2000	8.2	13.3
2007	7.8	14.4
2009	8.4	14.8
2011	7.8	14.3
2012	7.6	14.0

\* 농어가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 1)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 비율.
- 2)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 인구 비율.

자료: 김미곤, 「소득불평등 추이와 쟁점」, 『보건복지포럼』(2014.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위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통해 알 수 있듯, 빈곤이 심화되어 왔던 것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줄어들어왔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어 왔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이는 근로능력평가 도입,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 등 수급자 관리강화를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 기초생활보장예산 및 수급자 수 추이 (2002~2012)

연도	예산액	예산상 인원	실제수급자수				
			전인구 대비(%)	합계	일반수급	조건부과 수급	특례수급
2001년	1,598,539	1,550,000	3.0	1,345,526	-	-	-
2002년	1,563,124	1,550,000	2.8	1,275,625	1,238,922	36,703	-
2003년	1,586,299	1,500,000	2.9	1,292,690	1,256,361	36,329	-
2004년	1,791,324	1,550,000	3.0	1,337,714	1,299,052	38,662	-
2005년	2,148,094	1,495,400	3.1	1,425,684	1,384,155	41,529	-
2006년	2,410,452	1,616,000	3.2	1,449,832	1,334,731	115,101	-
2007년	2,647,355	1,674,000	3.2	1,463,140	1,338,224	113,711	11,205
2008년	2,941,686	1,596,352	3.2	1,530,000	1,302,625	122,120	19,265
2009년	3,224,800	1,632,298	3.2	1,569,000	1,338,091	133,219	20,008
2010년	3,195,600	1,632,000	3.1	1,549,820	1,458,198(시설수급자 91,622)		
2011년	3,189,600	1,605,000	2.9	1,469,000			
2012년	3,126,400	1,570,000	2.7	1,394,000			

▽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553,165 (8,768,934)	8,816,896	263,731	3.1	
기초생활급여	3,404,973 (3,432,975)	3,486,717	81,744	2.4	최저생계비 5.5% 인상/(4/4분기)부양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1. 생계급여	2,590,188 (2,609,090)	2,523,954	△66,234	△2.6 (△3.3)	○ 지원대상 : 128만 명, 77만 가구→(상)123만 명, 74만 가구(하) 133만 명, 80만 가구 - 시설수급자 : 89→94천명
2. 주거급여	569,185	728,487	159,302	28.0	○ 지원대상 : 115만 명, 73만 가구→(상)108만 명, 70만 가구, (하)152만 명, 94만 가구 ○ 주요변수 - 주거급여 자격기준선: 중위소득 43% - 평균 급여액 8만원→11만원
3. 교육급여	129,481	111,053	△18,428	△14.2	○ 지원대상 : 26만 명 → 21만 명
4. 해산·장제급여	21,985	21,244	△741	△3.4	○ 지원대상 - 해산급여 : 3,914→(상)3,369, (하)3,597명 - 장제급여 : 34,239→(상)32,219, (하)34,399구
6. 양곡할인	92,344	100,109	7,765	8.4	
7. 기초생활보장관리	465	700	235	50.5	
8.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170	155	△11.6	
의료급여	4,248,347	4	188,707	4.4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4,393,947)	,437,054			
1. 의료급여관리	500	500	-	-	
2.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554	188,707	4.4	○ 기본진료비: 3,944,806→4,093,912백만원 - 1,571천명(기초 1,448천명, 타법 122천명)
긴급복지	62,453 (97,120)	49,938	△12,515	△20.0	
자활지원	587,056	541,821	△45,235	△7.7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2,146	1,402	△744	△34.7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55,690	299,964	44,274	17.3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14 발표자에서 인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b>노인가구(28.8)</b>	<b>238,790</b>	<b>240,030</b>	<b>244,565</b>	<b>242,470</b>	<b>245,935</b>	<b>243,132</b>	<b>244,529</b>	<b>243,708</b>	<b>237,213</b>	<b>236,617</b>
소년소녀가장가구 (1%)	13,932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모자가구(9.5%)	66,636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부자가구(2.3%)	17,158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b>장애인가구(21.2%)</b>	<b>112,987</b>	<b>123,418</b>	<b>136,892</b>	<b>144,747</b>	<b>154,066</b>	<b>162,527</b>	<b>171,330</b>	<b>173,322</b>	<b>173,751</b>	<b>174,112</b>
일반가구(31.6%)	230,827	249,393	276,227	288,945	294,872	291,680	302,202	291,774	277,081	259,866
기 타(5.6%)	37,531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 ▽ 2012년 가구원수별 현황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가구수	821,879	540,924	147,736	80,900	34,494	11,272	3,168	1,358
구성비	100	65.8	18.0	9.8	4.4	1.4	0.4	0.2

## 1. 기초법 개정안 추진 경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도 공약의 하나였다. 당선 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근로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강조하던 박근혜정부는

- 2013년 5월 14일,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이뤄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내놓고,
- 5월 25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대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유재중의원의 법안은 많은 반대와 논란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 2014년 2월 송과 세모녀의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데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세모녀 법’으로 불리기 시작
- 이어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의원 개정안을 반영해 2014년 11월 17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시민단체는 줄곧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정부의 의지임을 밝히면서도 정부입법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공포된 상황이며, 지침 등은 6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2. 기초법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우려점

###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 (1) 개별급여 도입

기초법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총 7개의 급여가 포함되어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행 기초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만큼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7개 급여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을 유지해왔다. 수급가구가 되면 모든 급여를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면 모든 급여를 박탈당한다. 이는 탈수급 유인을 떨어뜨리고, 탈수급 가구의 자립을 어렵게 해 비판받아 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한다는 점이었다.

▽현행 최저생계비 및 최대 현금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대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기초법 개정 비교표

현행			개편 후		
선정기준	최대 급여수준(내용)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	생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주거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28%
			의료	중위소득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교육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 (2)상대빈곤선(중위소득) 기준 도입

현행 기초법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최저생계비로 동일하다. 최저생계비의 법적 정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2조의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으로 명시되어 있다.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가 이뤄지고,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표하였다.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11개비목(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세금) 등의 비목)을 설정 → 비목별생활필수품<sup>17</sup>선정(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 하위 40%이하?) → 표준가구선정(4인가구, 부모 40대, 자11세, 9세, 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을 조사하여 세부품목별 지출비용을 합함 → 비목별 소비지출액 도출하여 합산, 4인가구 최저생계비산출 →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산출

17)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선정 및 내구년수와 가격책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표준가구선정이 수급가구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더군다나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 방식, 혹은 상대빈곤선 도입의 주장이 있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급여별 기준을 만든다는 점이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각 급여의 기준선(중위소득 기준 00%)를 공표한다. 201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7월~12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

(단위 : 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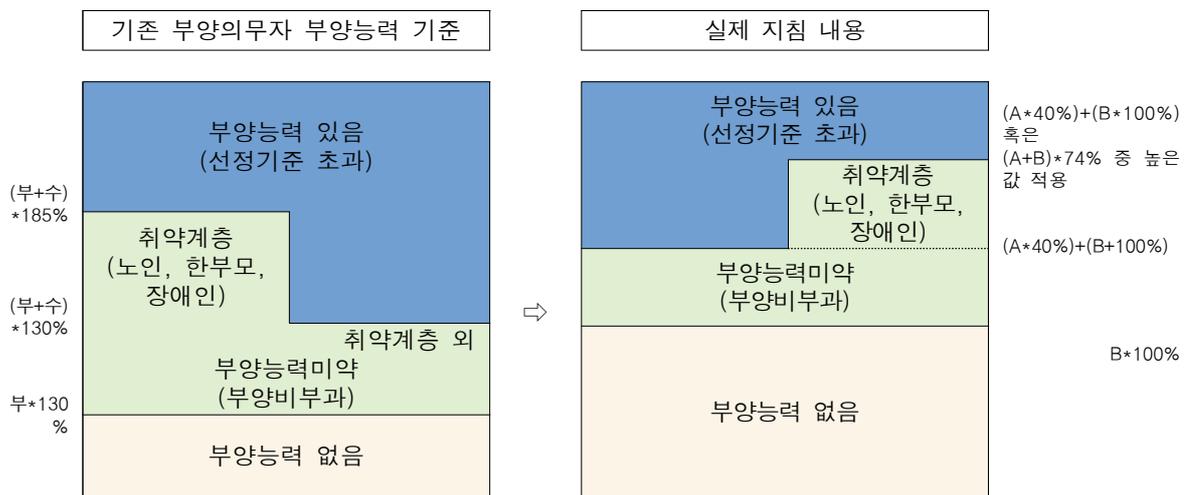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 (3)부양의무자기준 완화

7월부터 변화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이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은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 수급가구 중위소득) \* 85%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 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 지출 등을 감안해 1인 추가 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총 3인가구라면 4인가구 중위소득을 활용해 부양능력 판정)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된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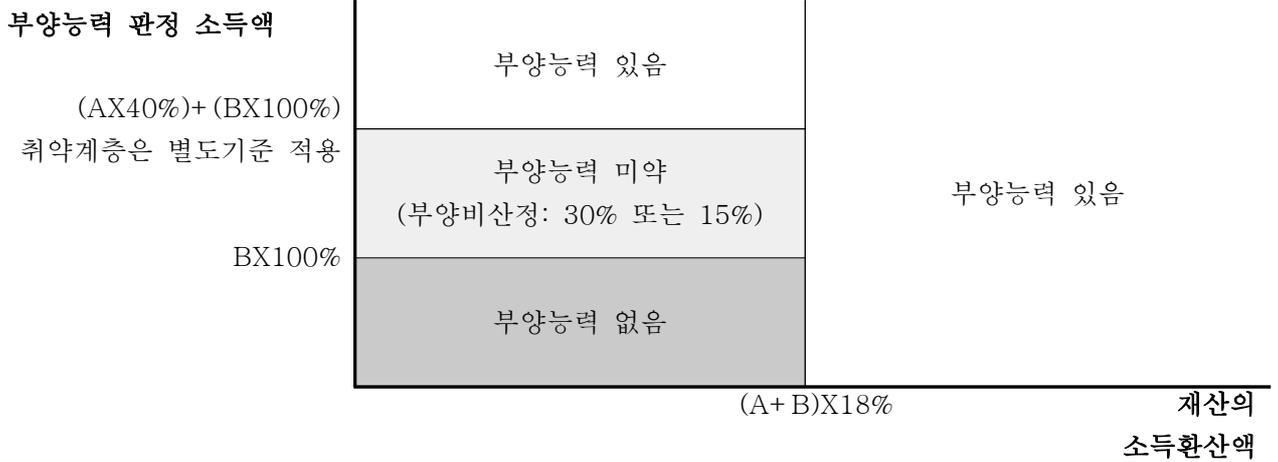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한다.

\*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수: 수급가구 최저생계비

\*A: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B: 수급가구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도해 (2015년 기준)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X40%)+(BX100%)]와 [(A+B)X74%]중 더 높은 기준 적용

▽부양능력 판정기준표(판정소득액 기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능력판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1인	있음	2,187,272 (2,312,259)	3,285,131 (3,285,131)	4,066,299 (4,066,299)	4,847,468 (4,847,468)	5,628,637 (5,628,637)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2인	있음	2,626,415 (3,124,674)	3,724,274 (3,937,090)	4,505,442 (4,515,154)	5,286,611 (5,286,611)	6,067,780 (6,067,780)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3인	있음	2,938,883 (3,702,739)	4,036,742 (4,515,154)	4,817,910 (5,093,219)	5,599,079 (5,671,284)	6,380,248 (6,380,248)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4인	있음	3,251,350 (4,280,804)	4,349,209 (5,093,219)	5,130,377 (5,671,284)	5,911,546 (6,249,349)	6,692,715 (6,827,414)

5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3,563,818 (4,858,869)	4,661,677 (4,661,677)	5,442,845 (6,249,349)	6,224,014 (6,827,414)	7,005,183 (7,405,479)

※ 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 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 (4)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 ○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으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급여별 기준선을 따로 정하게 된다. 다만 예산에 따라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요동칠 것을 우려, 법안에 몇 가지 급여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법안에 명시된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 2015년 기준 맞춤형 급여 기준선

##### ○생계급여 보장수준 -선정기준과 동일

##### ○의료급여 보장수준 -현행과 동일

##### ○주거급여 보장수준

-최저주거기준<sup>18)</sup>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sup>19)</sup>)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었다.

-현물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 실시. (노후도 조사에 따라 제외 가능)

##### ▽ 개정안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8) 최저주거기준: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

19) 연 4%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이상	36	33	25	23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굵은 선 안쪽은 현행 주거급여보다 하락하는 부분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전월세실서래가와 주택임차료상승률자료를 바탕으로 선정

## ○교육급여 보장수준 (2015년 6월까지 수준)

▽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2)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의 우려점

사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구상은 2010년에 나온 것이다. 당시 기초법 등 제반의 빈곤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학계와 함께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했고 빈곤사회연대는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기초법 개정에 맞선 싸움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개정안의 실체는 점차 명확해졌다. ‘개별급여 도입과 상대적빈곤선 도입’이라는 슬로건은 수용했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선정기준/보장수준 현실화’라는 내용은 불용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기준에 결격이 없을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1만 7천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급여는 49만 9천 원이다. 61만 7천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현금급여에서 소득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이라며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급여 박탈이 일어나는 상황과 이 때문에 탈수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개별급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나 동의할 이 전제의 결론은 다소 이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에게 가장 절실

한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낮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를 제외한 개별급여는 기존 차상위계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가장 긴급한 욕구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제자리에 있으며, 오히려 나빠질 전망이다. 송파세모녀는 한 달 150만 원의 소득에 50만 원의 반지하방 월세를 지출하던 '주거빈곤층'이었지만 3인 가구 기준 148만 원이 될 개정 주거급여는 송파세모녀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탱하던 주요 개념인 '최저생계비'가 무력해지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던 자활사업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사회권을 명시한 공공부조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명백한 후퇴다.

### (1)최저생계비 해체

핵심적인 첫 번째 문제점은 최저생계비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법 조문 안에 남아있던 하나 종전의 역할(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기존 수급자와 최저생계비를 공격했다. 현재 수급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수급자는 정기적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양비 등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시 해당 금액이 삭감된 수급비만을 받고 있으며,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급여들은 해당 행위가 발생할 때만 지급받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비수급빈곤층 발생의 원인은 '선정기준'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수급자들을 탓하는 것이다. 기초법 개정이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개별급여는 통합급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행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1,2종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로 포괄되지 않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제각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 (2)수급자 권리후퇴, 현장 격무 심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번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sup>20)</sup>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았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20) 박정숙의원,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 주최한 토론회('10.10.15)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이고, 조사대상은 수급가구 및 신청탈락과 중도탈락을 경험한 가구로서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과수급가구를 모두 포괄하여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은 가가호호 방문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면접조사함., 591부 회수 중 5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됨.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달라진다면 과연 수급자들의 신청권, 이의신청권, 알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심각한 격무상황 역시 심화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신청방식은 종전과 변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을 각 부처에 전달하는 일은 다시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부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상호간 공유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복잡한 제도 설계와 전달과정은 수급자의 접근권을 떨어뜨리리고, 이는 결국 빈곤당사자, 수급자들과 전담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급신청 후 결정통보 기한을 14일~(사유가 있을 시 최대)30일에서 30일~60일로 변경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긴급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항목이다.

### (3) 낮은 보장수준과 예고된 사각지대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개별급여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의 취지는 ‘누구에게’와 ‘얼마를’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도입된 생계급여 보장수준은 기존 현금급여 최대금액인 중위소득 31%보다 떨어졌고,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27%에서 소폭 상승했다고 미미한 수준이라 수급자들의 삶의 질 개선, 빈곤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조치다. 특히 기존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의 보충적 성격밖에 갖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때 31%에서 후퇴하는 것은 사실 상 삭감조치가 될 수 있다. 조사<sup>21)</sup>에 따르면 비수급빈곤층의 수급신청이유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가 82.6%로 가장 높았다. 가장 중요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43%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의 대폭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폭완화 된 이 가구는 ‘송과 세모녀 법’이라는 개정안 이름이 무색하게도 송과 세모녀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과 세모녀의 일상 소득은 어머니의 소득 150만원과 딸들의 간헐적 아르바이트, 근로능력평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3인가구 기준 149만원을 넘는다.

#### ※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 0.3) × Y(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 실질임대료로 봄

21)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문진영 등

보장수준 역시 너무 낮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의 3인가구가 14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 약 13만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 사는 단 140만원소득의 가구가 보조받는 월세의 양 치고는 실제 도움이 되기 미미하다. 서울이 아니라 4급지에 거주할 경우 급여수준은 단 4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제약은 강하다. 월세가 체납될 시 집주인의 신고로 급여는 중단되고 집주인에게 급여가 전달된다. 이는 불공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개정안 시행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시행의 전담부서가 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전담부서로서 조사, 보장내용 결정, 현금현물급여 실시까지 모든 절차를 맡는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보장기관(지자체)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시 보장기관에 전달할 책임만 가지고 있을 뿐,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방법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위탁된 이후 근로능력평가 자체에 대해 수급자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는 상황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기준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수급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 130%다. 이를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의 합 85%로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유입될 수급자 숫자에 대해서 추계하는 것은 12만명 정도다. 이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117만명의 사각지대 중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20만 명의 절반정도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을 몇 차례 완화한 바 있지만 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바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크게 ‘범위’ 완화와 ‘소득기준’ 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먼저 ‘범위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첫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항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와 2006년의 정의이다.

2000년 “부양의무자”란 (중략)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2006년 “부양의무자”란 (중략)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그 범위에서 완화를 경험한 바 있지만 수급률은 2001년 3.2%에서 2006년 3.2%, 2007년 3.2%로 동일했다. 2012년 수급률은 2.7%까지 떨어졌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하더라도 ‘기타 요인’을 통한 수급자 수 통제가 언제나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이는 지속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난 2003년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이란 정책 보고서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두 번째로 소득기준 완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와 수급가구 최저생계비 합 의 130%>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에 발생할 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 2012년 이 기준은 일부 완화되어 수급가구가 근로무능력자(20세 이하, 65 세 이상, 장애인,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무능력 판정 시)로만 구성되어 있을 시 해당 기준을 185%로 상향했다. 이 당시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6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단 3만명만이 수급권을 얻었다. 전체 수급자 숫자는 오히려 줄 어들어, 제도를 완화한다고 선전해 놓고 다른 수급자들을 더 떨어뜨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 였다.

### 3. 기초법의 진짜 개선 과제

송과 세모녀의 죽음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책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내놨다. 2012년,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2만여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기초생 활수급자 숫자도 늘어나지 않았다. 당연하다. 사각지대는 정부의 말처럼 안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신청을 해봤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제조사 후 발표된 결과를 보면 일제조사로 인해 같은 해 전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7만 4천명이 복지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원이 완료된 것은 전체의 33%에 불과 하며 그 중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의 지원완료자는 단 6천 7백명에 그쳤다. 전체 지원완료자의 70%에 달하는 1만6천명이 민간자원으로 연결되었다.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중 기초생활보 장 지원절차 진행 중은 2만명 정도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은 2주, 최대 한 달 안에 그 결 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신청자 7만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하는 인원은 보장여부 미결정자와 결정자를 합해 2만 2천명에 불과한 것이다.



△2012년 복지소외계층 일제조사 포스터



△2014년 복지소외계층 일제조사 포스터

이것은 새로운 결과가 아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국 300여 비수급빈곤층 가구의 실제

조사<sup>22)</sup>에 따르면 70.5%가 과거 기초보장 수급신청이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빈곤층이 ‘몰라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탈락하거나 탈락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역시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질책과 달리 이미 신청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절박한 이들이 끊임없이 SOS를 보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탈락자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비롯한 보수적인 판정체계, 비현실적인 근로능력평가와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등의 부과는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 1)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현실화해야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변화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았다. 이번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재산기준이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구나 지역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하락해 온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수준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수급빈곤층의 빈곤상황 및 낮은 탈빈곤가능성, 선정기준으로서 생계급여 기준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①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②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한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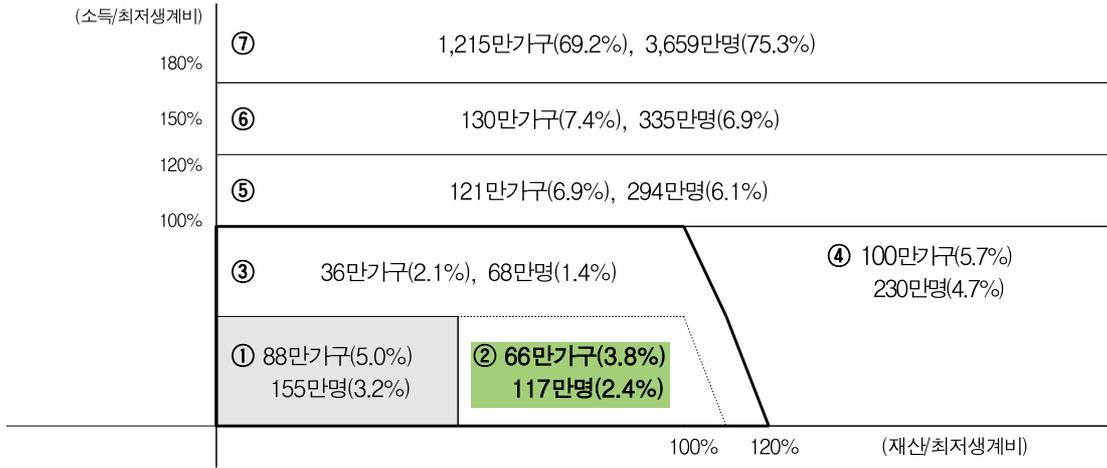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되었으나,<sup>23)</sup>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확산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22)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문진영 외, 2014)

23) 법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1차 개정(04.3.5)을 통하여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2차 개정(05.12.23)을 통

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으로, 2006년 기준 103만 명보다 1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10. 빈곤실태조사 결과 빈곤층 규모 >

현행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대상자 155만명 중 70% 이상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간주부양비가 부과되는 수급자들은 부양가족과 실질적인 교류나 소득이전 확인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상의 소득파악 자료에만 근거해 간주부양비가 부과되거나, 이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2012년 여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뒤 거제 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은 이씨 할머니가 있었다. 2013년에는 이혼한 전처와의 딸이 취직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신장투석환자가 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자살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010년 조사결과 117만명, 당시 155만명이던 수급자가 13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노인 빈곤율이 50%로 훌쩍 올랐으니 지금 이 숫자는 훨씬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자기준은 단지 ‘부양의무자 있음’만을 규정하지 않는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자의 수급권은 제한당하거나 아예 박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소득을 얻기 힘든 이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과 대립한다.

## 2) 가장 큰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유교 전통의 효 사상 붕괴, 가족 해체, 국민정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실과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수급신청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은 오히려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함으로써 현재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 것임.

려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적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넘어섰다. 늘어나는 노인 빈곤율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사회적 부양’을 요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대상 범위에서 일부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 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부양의무자기준 전체 삭제	6조 8천억원	94만명
부양의무자기준 삭제하되, 1촌 직계혈족에게 보장비용징수	5조 3천억원	94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 면제	1조 4천억원	21만명
사위, 며느리 부양능력 평가기준 완화	6천억	9만명
65세 이상 노인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면제	5천억	7만명
중증장애인 수급자 시설퇴소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56억원	0.5만명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 (보건복지부, 2014)

완화내용	소요예산	신규보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3조 1천억원	94만명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440억원	42만명

보건복지부의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부양의무자기준 전체 삭제 소요 예산은 6조 8천억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중앙정부 투입 재정은 약 8조원으로, 14-15조의 재정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에 불과하다. 흔히 부양의무자기준 탈락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을 ‘사각지대’ 라고 호명하지만 사실 이들은 사각지대가 아니다.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현재도 눈에 보이는 빈곤층이다. 하루 빨리 제도 내로 흡수하는 것만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의 대규모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식으로 이뤄진 이번 기초법 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룩했던 약간의 성취마저 먼지로 돌려버릴지 모른다.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무너질 수 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이 8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기초법의 진짜 개정’ 싸움을 시작해야할 때다.